

안산시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(박은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72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5. 22.

발 의 자 : 박은정, 박태순, 이지화,
송바우나, 유재수, 김진숙,
한갑수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- 교통약자인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 (안 제3조)
-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(안 제4조 ~ 안 제5조)
- 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(안 제6조)
 -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노인보호구역(의료기관, 약국) 규정
-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(안 제7조)
-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- 교통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 ~ 안 제11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○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

6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4

【붙임 1】 제정조례안

안산시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 보호구역”이란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2. “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”이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등) ① 시장은 「교통안전법」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안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(이하 “보호구역”이라 한다)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
1.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 방향
2. 보호구역의 현황
3.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·안전표지·CCTV에 관한 사항
4. 보호구역에서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·정비·유지에 관한 사항

5.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·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

6.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확보 및 재정 지원 계획

7.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 계획

8.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「교통안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안산시 교통안전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구체적으로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제6조(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)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”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.

1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

2.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

제7조(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)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확히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

2. 교통안내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

3. 도로부속물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
4. 해당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와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5.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

6. 공사 전·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홍보 및 교육) 시장은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의 구축) 시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, 교육지원청,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교통지도) 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에게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,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1조(지원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경찰서,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, 개선,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박은정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90)